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 방안 연구

**- 제안요청서 -**

국 토 교 통 부

(산업입지정책과)

##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	1
II. 과업의 내용 .....	2
III. 과업수행 지침 .....	4
IV. 예정 공정표 .....	10
V. 사업자 선정방안 .....	11
VI. 제안서 작성방법 .....	14
VII. 양식모음 .....	15
VIII. 보안특약 .....	22

# 1. 과업의 개요

---

1. 과업명 :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방안 연구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지역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권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후보지 위치, 입지 적정성, 기업수요, 지역별 산단 현황, 국가적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또한,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지역 거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
- ☞ 신규 국가산단 개발 건의(안)에 대해 후보지 선정 및 지역별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 심화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
  - 산업단지가 지역내 주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또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 방안 필요
- 지역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지역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 건의(안)에 대해 후보지 선정 및 지역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 지역내 주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300일)

4. 예산 : 100,000,000원

## II. 과업의 내용

---

### 1. 그간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평가

- 국가산단,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현황 검토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사업 추진상 어려움 분석
  - 최근 10년간 국가산단 조성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안정적 입지 공급 및 적기 조성에 대해 분석
-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측면에서 산업단지 입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적정성 검토
  - 기존 입지 공급 및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 2. 신규 국가산단 개발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도출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건의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에 대해 입지여건, 입지수요 등 개발 타당성 등 검토
    - (입지여건) 후보지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규제 등 개발 가능성\*, 국가·지방정부 상위계획, 기타 개발 가능성 및 저해요인 등 검토
- \* GB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업지역 지정 여건, 주변지역 지가상승 동향 등

- (입주수요) 후보지별 주요 유치산업 성장 전망, 인근 산업입지 공급현황,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정책, 거점시설 입지여부 등 후보지별 입주수요 확보 전망 검토

□ 국가 개발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안) 도출

- (국가조성 필요성) 중앙부처 산업 육성계획 등 국가적 육성 필요성, 대규모 용지 조성 및 개발촉진 필요성,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지역 자체개발 여건 등

\* 필요시 전문가,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정성적인 방식도 활용

- (후보지 선정)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여 후보지 선정(안) 도출

### 3. 신규 국가산단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

□ 후보지별 입주 수요, 지자체 준비 정도 등 추진 여건을 토대로 사업 추진 방식 등 전략 마련

- 후보지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유형(국가, 도시첨단 등) 검토,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등 지원방안, 기타 행·재정적 지원방안

□ 후보지별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단별 특화된 개발방향 마련

- 후보지별 맞춤형 규제완화,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방안,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기업 지원방안

### 4. 지역발전 거점 산업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공익성 확보방안 및 산업용지 비율의 합리적 적용방안 등 검토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 생산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기업투자 및 기업 이전 지원 확대 방안

- 입지 선정·산단 조성·산업 생태계 형성 등 산업단지에 기업투자 및 기업 이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추진 방안
- 글로벌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기업친화형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지원 방안

## III. 과업수행 지침

---

###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매월말 진도 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이행서약을 제출(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 2. 과업의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3.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 인원 및 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한다.

##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

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대내·외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6.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연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전에 조사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7. 전문가 활용

-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최대한으로 참여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 특히, 과업 착수 초기에 지역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 이에 따른 자문내용, 수용사항 및 처리계획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한다.

##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법령, 보안규정 및 이 과업지시서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9.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0.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사업내용별 추진공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를 제출한다.
-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11. 용역비용의 사용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1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과업 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3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연구방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검증대상 개발계획별로 검증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 한다.
- (중간보고) 중간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최종보고)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 14일 전에 보고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일반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최종보고서(파일 포함)로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 시 사업시행자에게 50부를 제출한다.
- 각종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안)	과업 준공 1개월 전	5부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시	50부	최종보고회 보고내용 반영
최종보고서 CD	과업종료 후 1주 이내	3 EA	

### 13. 보안대책

- 본 과업 참여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규직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IV.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개월수	개월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그 간의 국가지정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평가												
2. 신규 국가산단 개발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도출												
3. 신규 국가산단 추진전략 및 개발 방향												
4.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 ,입지 제도개편 방안												
5. 보고 관리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준공 보고

#### V. 사업자 선정방안

#####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접수처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 접수방법 : 전자제출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43)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3.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선정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평가(80%),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 선정

#### 4. 평가방법 및 기준

##### (1) 기술능력 평가 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100)	과업수행여건 (20)	기관평가 (10)	- 기관 예산규모(정부 출연금 포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10
		과업수행전문성(10)	- 해당분야 인력(박사급)의 보유수	10
	기본과업수행부분 (80)	그간의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평가 (10)	- 국가산단,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현황 검토하여 그간 제기된 사업 추진상 어려움 분석	5
			-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측면에서 산업단지 입지 공급 및 지원정책 적정성 검토	5
		신규 국가산단 개발 타당성 검토 (25)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건의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입지여건, 입지수요 등 개발 타당성 등 검토	25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도출(15)	- 국가 개발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안) 도출	15
		신규 국가산단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 (20)	- 후보지별 입주 수요, 지자체 준비 정도 등 추진 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 방식 등 전략 마련	10
			- 후보지별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단별 특화된 개발방향 마련	10
		지역발전 거점 산업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10)	-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
			- 기업투자 및 기업 이전 지원 확대 방안	5

##### □ 계량평가(20점)

##### ○ 기관평가 (10점)

##### - 기관 예산규모 (5점)

구분	100억원 초과	5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점수	5	3	1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 (5점)

구 분	0회	1회	2회 이상
점 수	5	3	1

○ 과업수행 전문성 (10점)

구 분	해당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보유수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하
점 수	10	7	5	3	1

※ 도시계획, 법학, 경제 등 관련 전공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연구참여와 무관)

□ 비계량평가(80점)

- 평가세부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고 아래 배점기준 적용

평가요소 구분	평가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 소 미 흡	미 흡
각 산단별 개발현황 검토하여 그간 제기된 사업 추진 상 어려움 분석(5)	5	4	3	2	1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측면에서 산업 단지 입지 공급 및 지원정책 적정성 검토(5)	5	4	3	2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건의하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입지여건 등 개발 타당성 검토(25)	25	22	19	16	13
국가 개발이 필요한 사업 후보지 선정(안) 도출(15)	15	13	11	9	7
후보지별 입주수요, 지자체 준비 정도 등 추진 여건을 토 대로 추진 전략 마련(10)	10	8	6	4	2
후보지별 지역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단 별 특화된 개발방향 마련(10)	10	8	6	4	2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5)	5	4	3	2	1
기업투자 및 기업 이전 지원 확대방안(5)	5	4	3	2	1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2)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  
평가(배점한도 20%)

## VI. 제안서 작성방법

---

### 1.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 일반현황에 기재할 참여연구원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2. 제안서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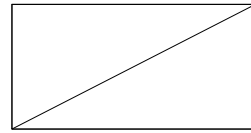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VII. 양식 모음**

---

1. 제안서 표지(서식 1)
2. 서약서(서식 2)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서식 3)
4. 참여인력 요약 및 연구진 이력사항(서식 4)
5. 해당분야 인력(박사 학위) 보유현황(서식 5)

[서식 1] “제안서 표지”



#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방안 연구

제안자명 : (인)

##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방안 연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서식 4]

##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00.00.00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령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5]

## 해당분야 인력(박사 학위) 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00.00.00			

\* 본 연구 참여 연구진과 무관하게 작성

## VIII. 보안 특약

---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별
심 각	1.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분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li> <li>○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li> <li>○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구분	위 규 사 항	처 별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